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4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이소영·김원이·김태년

장철민 · 강훈식 · 박지원

채현일 • 정준호 • 김기표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 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금액과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을 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②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u>따른</u> 금액으로 한다.	따른 금액과 가입기간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		
	<u>다 100</u> 만원씩을 더한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